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의안 번호	13468
----------	-------

요구연월일 : 2025. 10. 2.

요 구 자 : 유상범 · 김은혜 · 최은석
곽규택 · 최수진 · 박상웅
서명옥 · 이종욱 · 조승환
서지영 · 조지연 · 강선영
박충권 · 박수민 · 신동욱
우재준 · 박준태 · 정희용
조배숙 · 주진우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서영교)를 「국회법」 제155조 제1호, 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서영교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 둔 2025년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지난번에 제보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 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들어 보세요”라고 발언하였음.

다. 2025년 5월 10일자 ‘열림공감TV’ 영상이 스스로 ‘믿거나 말거나 풍문과 제보를 종합한 것’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관련되어 있는 고도의 공적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서영교는 최소한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반론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전혀 없는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켜 선거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 했음.

라.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의 범죄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는 범죄행위임.

마. 또한 2025년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과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반복하여 발언함.

바. 이는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한 국회의원 서영교의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함.

사. 무엇보다 국회의원 서영교는 상임위원회라는 공적 공간의 상징성과 공신력을 이용해 신빙성 낮은 풍문을 증거처럼 포장·확산시켜,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켰고, 대법원장과 특정사건을 연결해 ‘사전 기획’이 있었던 것처럼 암시·주장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권력분립의 헌법 원리를 훼손하였음.

아. 결국 국회의원 서영교의 위 발언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배

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호,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